

과업지시서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홍보 및 운영)

2023. 09

◀ 목 차 ▶

I. 과업의 개요	1
II. 과업의 내용	2
III. 계약 추가 특수조건.....	8



I 과업의 개요

□ 과업명

가.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홍보 및 운영

□ 과업기간

가. 과업기간 : 2023. 10. 01. ~ 2023. 12. 31. (3개월)

□ 과업예산

가. 금 이천만원정(₩20,000,000)(VAT 포함)

□ 과업의 개요

가.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 필요

- 1) 운영계 메타버스 플랫폼의 홍보와 운영을 보장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요구됨
- 2) 운영계 메타버스 플랫폼 일반사용자와 기업 및 기관 사용자의 문의사항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 요구됨
- 3) 일반사용자와 기업 및 기관 사용자의 문의 사항 해결을 위한 활동은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수행하는 과정이 요구됨

II 과업 내용

□ 과업의 목적

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하 '우리원'이라 한다)에서 개발이 완료된,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이하 '메타포트'이라 한다)의 서비스에 필요한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1) 홍보: 메타포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활동
- 2) 운영: 메타포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접수받고,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 3) 근접 밀착 지원을 통한 메타버스 플랫폼 홍보

□ 과업의 배경

가.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에 따른 홍보 및 운영 체계 수립 필요

나. 메타포트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하고,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함

다.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정식 서비스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 체계에 대한 필요성 대두

라. 대부분의 메타포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며, 이로 인한 사용자들의 재방문율의 저하로 인해 지속적 콘텐츠 관리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과업의 범위 및 방법

가. 과업기간 : 2023. 10. 01. ~ 2023. 12. 31. (3개월)

나. 과업 범위

2) 메타포트 홍보

· 메타포트 홍보는 아래 단계를 거쳐 수행이 필요함

: ① 홍보 계획 수립 → ② 홍보 계획 협의 → ③ 홍보 계획 수행 → ④ 결과 보고

※ ② 홍보 계획 협의는 메타포트 담당자와 협의 필수

번호	과업 내용	비고
1	메타포트 홍보 영상 기획 및 제작	콘텐츠 제작 기획
2	메타포트 홍보 인쇄물 기획 및 제작	콘텐츠 제작 기획
3	메타포트 홍보를 위한 월별 계획 보고	월별 계획서

※ 홍보영상 제작 조건

1. 프로덕션 요구사항: 경상북도 메타버스 애니메이션 제작
2. 재생 시간: 30초 이상 길이의 4k(3840*2160) 3D 애니메이션
3. 목적: 경상북도 메타버스 소개 및 홍보
4. 기술 요구사항:
 - 1) 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사용 (예: Maya, Blender 등)
 - 2) 고해상도 렌더링 및 애니메이션 기술 적용
 - 3) 캐릭터 및 배경 디자인 작업
 - 4) 카메라 애니메이션 및 움직임 제작
 - 5) 캐릭터 및 배경 디자인:
 - 6)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지역 및 특색을 반영한 배경 디자인
5. 음향 효과 :
 - 1) 배경 음악 및 효과음 삽입

- 2) 자연 소리 및 환경 소리 효과 추가
- 3) 나레이션 필요시 성우 나레이션 적용

5	컨텐츠센터 기업관 컨텐츠 등록 안내 및 기업별 요청 작업	등록 안내 운영
6	버그 및 신고사항 접수 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모니터링

※ 홍보 인쇄물 기획 및 제작 조건

1. 프로젝트 개요: 경상북도 메타포트를 소개하는 홍보 인쇄물 제작
2. 목적: 지역 메타버스의 특징점과 장점을 강조하고 홍보
3. 대상: 관광객, 시민, 기업 등
4. 요구사항:
 - 1) 브로셔 또는 전단지 형식의 인쇄물 디자인 제작
 - 2) 디자인 컨셉 및 스타일 가이드 제시, 이미지, 텍스트, 로고 등의 콘텐츠 통합
5. 언어: 한국어
6. 디자인 요소:
 - 1) 경상북도 메타버스의 주요 지역 및 특색을 반영하는 디자인
 - 2) 고화질 이미지 및 그래픽 활용
 - 3) 명확하고 가독성 높은 폰트 선택

4) 홍보 및 운영 인력 조건

-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관련 기술적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력이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홍보 및 운영이 필요함
- ※ WebGL, Unity, 공공클라우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및 관리 유경험자 필수

3) 메타포트 운영

- 메타포트 운영은 아래 단계를 거쳐 운영이 필요함
- : ① 요구사항 접수 → ② 요구사항 수행 계획 수립 → ③ 요구사항 수행 계획 협의 → ④ 요구사항 해결 → ⑤ 결과보고
- ※ ③ 홍보 계획 협의는 메타포트 담당자와 협의 필수

라. 과업방법

1) 경북 메타포트 홍보 및 운영 지원

- 홍보 및 운영 과정에서 이슈사항 발생으로 발주처에서 요청시 30분 이내 대면 회의가 가능한 상주인력 운영이 반드시 필요함.

2) 홍보 및 운영 지원 담당인력 조건

- ICT 분야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등 유경험자
- WebGL, Unity, 공공클라우드 등 기술적 이해가 있고, 대규모 CMS, ERP 등 관리에 대한 유경험자

번호	기술지원 항목	비고
1	메타포트 공항 컨텐츠 등록 관리	컨텐츠 등록 관리
2	메타포트 도청내 영상/사진/이북/ NPC 등 컨텐츠 등록 관리	컨텐츠 등록 관리
3	메타포트 면세점 영상/사진/이북/ NPC 등 컨텐츠 등록 관리	컨텐츠 등록 관리
4	메타포트 컨벤션센터 영상/사진/이북/ NPC 등 컨텐츠 등록 관리	컨텐츠 등록 관리

□ 일반사항

- 가. 홍보 및 운영 지원 활동시간은 계약 기간 중 평상 업무는 평일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담당자의 장애통보(구두, 전화, 문서 등)에 의한 보수시간은 주야 24시간으로 한다.(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나. 홍보 및 운영 지원에 대한 월계 보고는, 월1회 제출 하여야 한다.
- 다. 운영지원은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 1) 기능상의 변경 혹은 구성상의 변경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 2)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이슈사항, 성능개선, 장애사항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일반사용자, 메타포트 이용 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접수를 받아, 이를 해결하는 것을 기능 및 성능 유지로 판단한다.
- 라. 신속한 운영지원을 위하여 실감미디어연구센터에서 30분 이내 대면 회의가 가능한 상주인력을 배치하여 요구사항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1) 운영지원 인력이 매월 대면 또는 원격으로 보고 회의가 요구됨으로, 운영 지원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마. 메타포트 운영 중 발생하는 장애유형별 대응절차를 현실성 있게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바. 장애발생시 복구조치를 하면서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 내용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아. 요구사항 접수시 요구사항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조건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홍보 및 운영 계획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함.
- 나. 홍보 및 운영 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홍보 및 운영 수행세부계획서
 - 2) 홍보 및 운영 인력의 조직도 및 24시간 비상연락망
 - 3) 홍보 및 운영 인력 조직도에 포함된 인원에 대한 경력사항, 보안서약서 및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
- 다. 점검
 - 1) 계약상대자는 매월 1회 해당 홍보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내역을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 2) 홍보 및 운영은 계획서에 의거 철저히 관리 되도록 한다.
- 라. 방 법
 - 1) 홍보 및 운영지원은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 2) 경북 메타버스 플랫폼 장애 발생 시 즉시 복구를 위해 요구사항을 접수받아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해결한다
- 마. 확 인
 - 1) 계약상대자는 홍보 및 운영지원 완료 시 우리 원 담당자의 입회하에 홍보 결과 및 운영지원결과를 서면보고서 형태로 확인함으로써 최종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아. 운영인력 조건
 - 1) 홍보: ICT 분야 홍보 콘텐츠 기획, 제작 등 유경험자
 - 2) 운영: WebGL, Unity, 공공클라우드 등 기술적 이해가 있고, 대규모 CMS, ERP 등 관리에 대한 유경험자

Ⅲ 계약 추가 특수 조건

□ 총 칙

가. 본 지시서는 본 사업에 필요한 홍보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 등에 의한 정부표준을 준용한다.

□ 계약의 이행

가. 본 내용에 대한 주계약자(이하“계약자”라 한다)와 위원 간 해석상 이견은 위원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내용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계약법 등의 규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나. 위원은 계약내용 전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다. 본 내용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도 정상운영 및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계약자의 오인 또는 누락된 상태로 계약 체결되어, 계약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술지원 등을 추가해야 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 감독 및 보고

가. 감독관

- 1) 감독관이라 함은 위원내 직원으로서 감독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2) 계약자는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이하“현장대리인”라 한다.)

- 1)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업체 소속의 전담 직원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2)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장비 및 자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3)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은 인력의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보안 대책

가. 계약자는 위원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의 유출 및 누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사업추진시 취득한 기관의 보안사항과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및 시설에 관한 일체의 정보는 외부에 유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정보 누출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한다.

- 1) 기관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모바일망 구성도
- 2)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 3) 시험 결과물 및 관련 자료
- 4) 정보보호시스템 구성 및 도입 현황
- 5) 정보보호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설정 정보
- 6)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개인정보
-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정보 등

라. 사업 참여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행정처리 및 보안 유지를 위해 계약 후 7일 이내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은 반드시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자는 기관 보호구역 출입 시 아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용)

- 1) 해당 기관 출입 절차 준수
- 2) 노트북 등의 전산기기 무단 반출입
- 3) 외장형 HDD, USB, CD/DVD 등의 보조기억매체 무단 반입 등

바. 우리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계약자의 보안관련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 책임과 의무

가.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소홀, 태만,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본 계약에 의해 유지관리 되는 장비 등의 설치, 시험, 최적화 및 서비스 개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자는 참여인력의 안전사고와 그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진다.

다. 계약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감독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하고 설치, 검사 및 성능 시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본 내용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 내역의 세부규격 및 기능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반할 수 없다.

□ 부정당 업자 제재조치

가. ① 정보누출 적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1항19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시 입찰자격에 제한을 둔다.

※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간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 인 경우 : 1월

□ 지적 재산권 보호

가. 계약자가 유지보수 기간 사용한 물품으로 인해 우리원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과 선택으로 동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 기간 중 점유권 및 사용권을 우리원에게 즉시 부여하거나 동급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여야 하고 우리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가.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하며 우리원과 계약자의 해석이 충돌 시 우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1. 계약서
2. 유지보수계약 특수조건
3.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4. 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5. 과업지시서